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(권영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-145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 . .

발 의 자 : 권영숙, 강명숙, 김기석,  
김진천, 이필레, 이홍민

## 1. 제안이유

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4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## 3. 관계법령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
## 4. 조 례 안 :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10.15.~10.19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친화도시”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의 재활, 돌봄,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
2.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
3.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
4.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
5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기초조사 등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추진실적의 평가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교육 및 홍보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재정지원 등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**제13조(위원회 구성 등)**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임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4조(수당 등)**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

**제15조(포상)**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제6조(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)
- 나. 제7조(기초조사 등)
- 다. 제11조(재정지원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조례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  - ※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대부분 기 추진되고 있어 특별히 추가적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조선영
연 락 처	02-3153-8882